# 제5차 금융위원회 의사록

2016. 3. 15.

금 융 위 원 회

1. 일 시 : 2016년 3월 15일(화) 16:00~17:40

2. 장 소 : 금융위원회 회의실

## 3. 출석위원

임 종 룡 위원장 정 은 보 부위원장 숭 범 위 원 고 김 학 균 위 원 장 병 화 위 원 곽 범 국 위 원 정 순 섭 위 원 서 태 종 대리참석

4.	회의경과	
----	------	--

#### 가. 개회선언

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, 개회를 선언함

- 1) 2016년도 제4차 금융위 및 제1차 임시 금융위 회의록 보고
- □ 2016년도 제4차 금융위 및 제1차 임시 금융위 회의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
- 2) 의결안건 심의
- □ 의결안건 제43호 『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』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장이 내용을 설명함
  - ⇒ 원안 의결함
- □ 의결안건 제44호 『ㅇㅇㅇ보험 한국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』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  - ⇒ 원안 의결함

	의결안건 제45호 <b>『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』</b>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장이 내용을 설명함
;	⇒ 원안 의결함
	의결안건 제46호『ㅇㅇㅇ㈜ <b>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』</b>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	※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
	[잘못을 인정함. 다만, 과태료 금액이 투자원본 규모 대비 과 다한 점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드림]
	※ 진술인 퇴장
:	⇒ 원안 의결함
	의결안건 제47호『ㅇㅇ <b>ㅇ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안』</b> 을 상정 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	※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

[작년 50억원의 자본확충 및 인원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추진 중이며, 4월말 이전에 부족한 자기자본을 해소할 예정으로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결정을 4월말까지 연기를 요청함]

- ※ 진술인 퇴장
- ⇒ 원안 의결함

- □ 의결안건 제48호 **『공인회계사 5인에 대한 징계의결안』**을 상정 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
  - ⇒ 원안 의결함

- □ 의결안건 제49호 『ㅇㅇ저축은행의 경영개선명령 유지 조치안』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  - ⇒ 원안 의결함

3)	보고안건	심의
$\mathbf{v}_{i}$		

□ 보고안건 제14호 『**상호저축은행 이행강제금 제도운영방안** 보고』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### ⇒ 원안 접수함

□ 보고안건 제15호 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』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

## ⇒ 원안 접수합

□ 보고안건 제16호 『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』을 상정 하여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이 내용을 설명함

## ⇒ 원안 접수합

## 나. 폐회선언

위원장이 2016년도 금융위원회 제5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